

# 결 정

2018 - 4021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1. 조선닷컴 발행인 김 영 수
2.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 주 문

조선닷컴(chosun.com) 2018년 1월 16일자(이하 캡처시각) 「“복용 후 30일 이면 당뇨, 고혈압 100% 완치!”」 제목의 광고, 세계일보(segye.com) 1월 14일자 「급격히 치솟는 혈당 뚝! 당뇨 100% 완치 가능!!」 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치한다.

# 이 유

## ①조선닷컴



<18. 1. 16. 12:06 캡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15/2018011502946.htm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15/2018011502946.html)>

## ②세계일보



<18. 1. 14. 00:54 캡처>

<<http://www.segye.com/newsView/20180113001049>>

조선닷컴 세계일보는 건강기능식품 ‘혈케어365’를 광고하면서 그 제목에 「복용 후 30일이면 당뇨, 고혈압 100% 완치!」, 「급격히 치솟는 혈당! 당뇨 100% 완치 가능!!」 라고 달아 마치 당뇨, 고혈압 환자가 이 제품을 먹으면 100% 완치 되는 것처럼 과장된 문구를 사용했다.

그러나 이 광고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위반한 것이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전문지식이나 관련 정보가 부족한 독자들을 오도하여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며,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http://www.dbissue.com/html/event/hyulcare/index.html?CD=czoxODoiNDM0fF98NXxffDE1NTB8X3wwIjs=>>>

건강기능식품 광고 심의필 KHSA 심의번호: 21710125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 관련법에 의거하여 (사)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로부터 철저한 사전 검증을 통과하여 제품의 정보에 과장이나 허위광고가 없음을 확인하는 심의필 마크를 얻었습니다.

한/알/에/모/았/다  
**혈케어 365**  
 평상시 혈당·식후 혈당이 높은 사람들을 위해 한 알에 모았습니다.

혈당 개선    혈압 개선    혈행 개선

2018년 2월 7일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	김 용 담	김용담
위원	정 승 호	정승호
	장 명 국	장명국
	이 동 현	이동현
	장 인 철	장인철
	김 규 식	김규식
	강 희	강희
	하 윤 수	하윤수
	김 영 모	김영모
	박 현 갑	박현갑
	박 미 경	박미경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 신문광고는 독자에게 이익을 주고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는 그 내용이 진실하여야 하며 과대한 표현으로 독자를 현혹시켜서는 안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4) 대중의 상품에 대한 지식의 부족이나 어떠한 허점을 악이용한 것